

2018년 장애인문화예술교육사업 공모안내

2018. 3.

2018년 장애인문화예술교육사업 공모안내

I 사업개요

□ 사업목표

- 장애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·지원하여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제공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18년 장애인문화예술교육사업
- 사업기간 : 2018. 3월 ~ 12월(※ 교육운영기간 : 5월 ~ 11월)
- 지원예산 : 290,000천 원(도비 290,000천 원)
- 지원대상 : 장애인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가진 장애인 기관·단체·시설
- 교육대상 : 도내 장애인
- 지원내용 : 장애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·지원
- 추진체계
 - 주최/후원 : 제주특별자치도
 - 주관 : 제주문화예술재단(문화예술교육팀)

II 세부 추진계획

□ 공모내용

- 공모유형 : 일반공모
 - 대상기관 내 주 학습대상을 선정 후, 학습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제안(단순 강의,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지양)
- 교육운영기간 : 2018. 5월 ~ 11월

- 교육프로그램은 연간 최소 30회차 이내로 구성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(10~15회차 프로그램을 2회 이상 운영도 가능, 단 교육 대상자는 기수별로 달리해야 함)
- 교육인원 : 기수별 최소 12명 이내
- 교육장르 : 연극, 무용, 음악, 전통 등 문화예술 장르 및 구성에 국한되지 않으며, 교육대상을 고려한 단체의 고유한 특성 및 전문성을 적극 활용
- 교육방법
 - 교육목표에 따라 강의, 체험, 관람, 실현 캠프 등 다양한 형태를 선택하여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교육프로그램 구성
- 지원규모 : 1개 단체 당 10,000천 원 ~ 25,000천 원
- 지원내용
 -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강사비, 교육 재료비 등
 - 대외적 성과공유를 위한 발표회 등 행사 진행비(임차비, 결과물 제작비) 등

※ 지원금 사용이 불가한 항목(일상적 운영경비)

- 단체 운영비 : 상근 직원 인건비, 공공요금, 식비, 우편요금, 회의비, 평가회비 등
- 자산 구입비 : 사무기기 구입비, 기자재 구입비 등(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재단과 협의 후 구입 가능, 단 교육기간 만료 후 재단에 반납 조치)
- 진행비 : 사전 조사비 등

- 참여방법 : 지원사업 신청양식에 따른 사업내용 제안
 - 사업자별 신청 가능
 - 1개 사업계획서 내 3개 이내의 교육프로그램 제시 가능

□ 신청자격

-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가진 장애인 기관·단체·시설
 - 제주특별자치도 소재지를 두고 도내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(개인)운영시설,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단체
 -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1년 이상 운영을 한 실적이 있어야 함

- 도내 문화예술단체와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·운영 가능
 - 단, 책임기관은 장애인 기관·단체·시설이 되어야 하며 업무협약서 필히 제출
 - 문화예술기관(단체) 정보 제공 현황 참고(지원사업 공고 No.160번)

※ 신청제외대상

-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적이 1년 미만이며,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,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·단체·시설

□ 사업 공모 및 접수

- 공모기간 : 2018. 3. 26.(월) ~ 4. 9.(월)/15일간
- 접수기간 : 2018. 4. 2.(월) ~ 4. 9.(월)/8일간
- 지원방법 : 제주문화예술재단(www.jcaf.or.kr)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·제출
- 제출방법 :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(※우편접수시 4. 9(월) 도착분에 한함)
- 접수처 : (63196) 제주시 동광로 51(구. 이도1동 1244-4번지) 8층
제주문화예술재단(문화예술교육팀) 장애인문화예술교육사업 담당자 앞
- 제출서류

제출서류	부수	제출방법
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(이력서,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포함)	원본 1, 사본 3부. 총 4부.	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※ 지원신청서 이메일 발송 (jjkjh0423@jfac.kr)
단체등록증 (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)	1부	
주요활동증빙자료	2부	

□ 심사계획

○ 심사절차

서류심사

구분	진행내용
서류심사	- 심사대상 : 공모 참여 단체 - 심사방법 : 심사위원 구성을 통한 서류 심사

기획워크숍

구분	진행내용
기획워크숍	- <u>참여대상 : 공모 참여 단체</u> - 진행내용 : 심사내용 환류 및 사업계획 컨설팅 진행 · <u>선정단체(필수)</u> : 컨설팅 내용 사업계획서 반영, 보완하여 교부신청서 제출(미보완 시 선정 취소 될 수 있음) · <u>미 선정단체(선택)</u> : 사전 참여 신청 접수 후 컨설팅 진행 - 컨설턴트 : 심사위원회 중심으로 컨설팅단 구성

○ 심사기준

구분	내용	배점
계		100
사업취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목적과 기대효과 설정의 적절성 • 교육과정에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반영여부 	30
추진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기획 여부 • 교육 내용 및 방법론의 현실성 및 구체성 • 사업기간 및 교육 회차, 참여인력 구성의 적절성 • 예산편성의 적절성 • 전년도와 동일 프로그램인 경우 교육과정 및 내용의 전년대비 개선사항 제시 여부 	40
추진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참여기관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• 강사, 기획자, 사업 담당자 등 교육진행을 위한 소통 방법 	30

○ 프로그램 운영 주체 선정 · 지원

-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선정 · 지원
- 17년 장애인문화예술교육사업과 동일 프로그램 진행 시 교육과정 및 내용의 전년 대비 개선사항 필수 제시
- 도내 문화예술 기관(단체)과 연계한 장애인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수혜자에게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· 지원

○ 선정방법 : 심사위원 전원 합의로 결정

- 1개 단체 당 10,000천 원 ~ 25,000천 원 지원
- 20개 내외의 지원 단체 선정

□ 추진 일정(안)

구분	진행기간	행사명	내용
1	3.26.(월)~ 4.9.(월)	사업공고	제주문화예술재단(www.jfac.kr),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(www.artreach.or.kr)
2	3.27.(화)	사업설명회	-
3	4.2.(월)~ 4.9.(월)	사업접수	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
4	4월 중	서류심사	-
5		결과발표	제주문화예술재단(www.jfac.kr),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(www.artreach.or.kr)
6		기획 워크숍	심사내용 환류 및 사업계획 컨설팅
7		교부·정산 워크숍	집행 및 정산 방법 안내

〈붙임1〉 장애인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예산편성 기준

목	세	세세목	비고																					
운 영 비 (210)	일 반 수 용 비 (01)	기획자 인건비	○ 교육프로그램 회차당 50,000원, 2시간 초과 이후 시간당 20,000원 지급 - 1회 최대 11만원(5시간) 책정 - 기획자 인건비는 효율적인 사업관리(회계, 기록 등)를 하는 전제 하에 지원 가능 - 동일인이 기획자와 강사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 하나의 인건비만 지급 가능 (중복 지급 불가) ※ 기획자 인건비는 각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에만 인정	공통 사항																				
		강사비	○ 주강사 : 시간당 60,000원 / 보조강사 : 시간당 40,000원 - 강사비는 1일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 * 캠프,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경우 1일 최대 5시간까지 책정 가능 - 강사비와 특강 강사비는 중복 지급 불가 - 지급내역서(인적사항, 교육/강연일자 및 시간, 금액 등 포함) 작성, 계좌입금 원칙	공통 사항																				
		초빙 강사료 · 교통비 (연수 등)	○ 특강 강사는 전체 프로그램 회차의 10%를 초과할 수 없음 - 예시 : 총 30회차 프로그램의 경우, 최대 3회까지 특강 강사 활용 가능 ○ 2시간 초과시 매 시간마다 50%만 추가 적용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ffffcc;"> <th style="width: 20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등 급</th> <th style="width: 60%;">지급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강사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등급*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50,000/시간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등급*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50,000/시간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등급*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,000/시간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※ 1등급 : 대학총학장, 주요 기관장급 /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2등급 : 대학부교수급이상,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전·현직 예술강사 15년 이상 경력자, 전·현직 4급 이상 공무원 기업 간부(급) 및 이에 준하는 자 3등급 : 대학 전임강사이상,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·현직 예술강사로 15년 이하의 경력자 전·현직 5급 이하 공무원, 그 밖의 기타 경력자 ○ 도외-제주 방문시 항공비 실비 지급 ☞ <u>가급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강사를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권고</u>	구 분	등 급	지급금액	강사료	1등급*	250,000/시간	2등급*	150,000/시간	3등급*	100,000/시간	공통 사항										
		구 분	등 급	지급금액																				
		강사료	1등급*	250,000/시간																				
2등급*	150,000/시간																							
3등급*	100,000/시간																							
행사 진행자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ffffcc;"> <th style="width: 20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등 급</th> <th style="width: 60%;">지급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행사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등급*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0,000/시간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등급*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50,000/시간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등급*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,000/시간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※ 1~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	구 분	등 급	지급금액	행사료	1등급*	200,000/시간	2등급*	150,000/시간	3등급*	100,000/시간	공통 사항												
구 분	등 급	지급금액																						
행사료	1등급*	200,000/시간																						
	2등급*	150,000/시간																						
	3등급*	100,000/시간																						
편곡 및 작곡 관련 규정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ffffcc;"> <th style="width: 15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등 급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지급금액</th> <th style="width: 55%;"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편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등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0,000원/곡</td> <td style="font-size: small;">* 30마디 이하의 곡, 편곡료에서 50% 차감 지급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등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00,000원/곡</td> <td style="font-size: small;">* 80마디 이상의 곡, 편곡료에서 50% 추가 지급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등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00,000원/곡</td> <td style="font-size: small;">* 재편곡 재연성 재구성인 경우 원편곡의 1/2 만 지급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작곡</td> <td colspan="3" style="font-size: small;">* 작곡의 경우 전문가 수수료규정과 관계없이 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감수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등급무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,000원</td> <td style="font-size: small;">·곡당 50,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,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,000원을 지급함.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※ 1등급 : 국내외 국립 교향악단 급 이상의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 및 클래식 음악가로서 국내에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15년 이상 경력의 작곡가 2등급 : 국내 사구립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자	구 분	등 급	지급금액	비 고	편곡	1등급	500,000원/곡	* 30마디 이하의 곡, 편곡료에서 50% 차감 지급	2등급	400,000원/곡	* 80마디 이상의 곡, 편곡료에서 50% 추가 지급	3등급	300,000원/곡	* 재편곡 재연성 재구성인 경우 원편곡의 1/2 만 지급	작곡	* 작곡의 경우 전문가 수수료규정과 관계없이 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			감수료	등급무관	50,000원	·곡당 50,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,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,000원을 지급함.	공통 사항
구 분	등 급	지급금액	비 고																					
편곡	1등급	500,000원/곡	* 30마디 이하의 곡, 편곡료에서 50% 차감 지급																					
	2등급	400,000원/곡	* 80마디 이상의 곡, 편곡료에서 50% 추가 지급																					
	3등급	300,000원/곡	* 재편곡 재연성 재구성인 경우 원편곡의 1/2 만 지급																					
작곡	* 작곡의 경우 전문가 수수료규정과 관계없이 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																							
감수료	등급무관	50,000원	·곡당 50,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,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,000원을 지급함.																					

		3등급 : 국내 음악대학, 민간 오케스트라 등 편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				
일반 수용비 (01)	기타 진행비	○ 워크숍, 세미나, 포럼, 자문회의 등 행사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(사무용품, 소모품 구입, 현장주차비) ※ 회의 진행을 위한 다과비 및 식비는 사업추진비(240-01)로 책정·활용	공통 사항			
	회계 검사 수수료	○ 사업비 규모별 회계검사 수수료 기준액(부가세 포함) ○ 보조금 교부 시 회계검사 소요경비(수수료)로 포함				
		기준금액		수수료	기준 금액	수수료
		1천만원 미만		282,000	8천만원 이상~9천만원 미만	632,000
		1천만원 이상~3천만원 미만		282,000	9천만원 이상~1억원 미만	674,000
		3천만원 이상~4천만원 미만		336,000	1억원 이상~2억원 미만	848,000
		4천만원 이상~5천만원 미만		365,000	2억원 이상~3억원 미만	894,000
		5천만원 이상~6천만원 미만		505,000	3억원 이상~4억원 미만	940,000
6천만원 이상~7천만원 미만	547,000	4억원 이상~5억원 미만	985,000			
7천만원 이상~8천만원 미만	590,000	5억원 이상~6억원 미만	1,147,000			
공공 요금 및 세제 (02)	공공 요금	○ 행사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, 보험료 등	공통 사항			
임차 비 (07)	차량/ 장소/ 기자재	○ 차량 임차 : 실비적용 - 현실 반영한 적정 금액을 집행하되, 비교 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○ 장소 임차 : 공공시설 이용 등 최소비용 권장 ※ 매회차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교육장소 임차비 활용을 허용하되, 문화기반시설에 한하여 임차비 인정. 1회(3시간 기준) 최대 5만원까지 활용 가능 (상시 교육활동 장소에 한함) -문화기반시설 : 문화기반시설 총량의 박물관, 미술관, 도서관, 문예회관, 지방문화원, 문화의집과 생활문화센터 등 공공문화시설 ○ 기자재 임차 : 구입보다는 대여 권장	공통 사항			
위탁 사업 비 (15)	외주 업체 용역비	○ 행사 대행업체 용역, 디자인 용역, 영상물 제작 용역(DVD 추가 제작 등 단순 복제 작업 제외), 홍보(프로모션) 대행업체 용역, 구매(제작용역) 등 ☞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, 비교견적 시행(2곳)	공통 사항			
여비 (220)	국내 여비 (01)	여비 기준	○ 캠프, 진행시(외박) 경비 지급 기준			
			구 분	내 역	지급방법	지급액
			시내·외	교통비	실비	· 대중교통비 실비 지급 (개인차량 이용 불가, 대중교통 이용 권장)
				숙박비	실비 (1박당)	
	식비	정액	· 1일 1인 3만원 이내			
업무 활동 비 (240)	사업 추진 비 (01)	회의 식비	○ 다과비 기준단가 : 3,000원 / 1인 1회 기준 ○ 회의식비 기준단가 : 20,000원 / 1인 1식 기준 ※ 본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 절감 노력	공통 사항		
인 건 비 (110)	일용 임금 (03)	보조 인력	○ 단기용역비(일용직)/연간 30일 이내 활용 - 최대 1일 8시간, 61,000원(1인) ※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,530원 적용 ※ 외부숙박인 경우 90,000원	공통 사항		